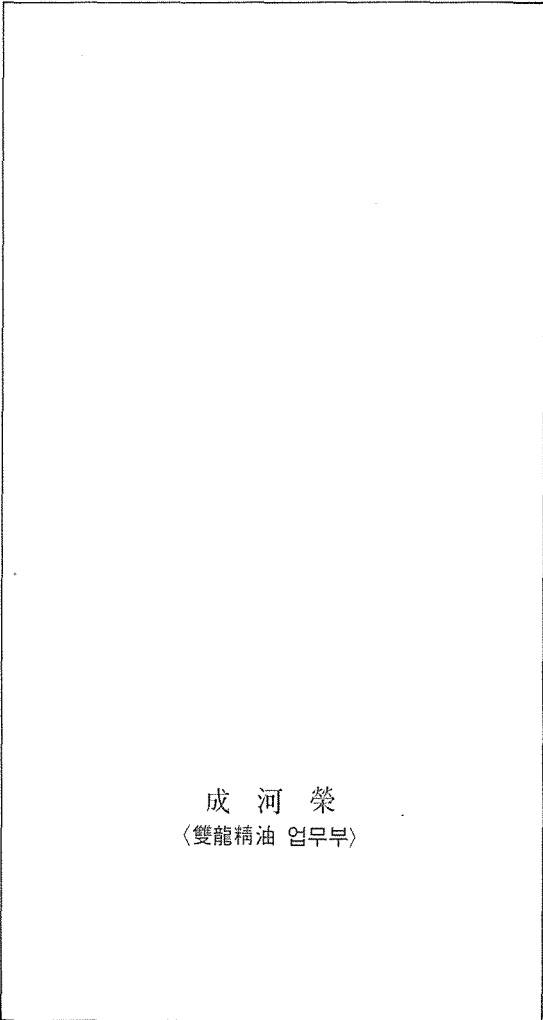


1. 머리말

1987년은 국내외적으로 제반여건이 대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잉태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지난 해는 우리에게 일대 轉換期의 시작이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진폭은 향후 상당기간 우리의 생활과 정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와 石油政策 방향



成 河 榮
(雙龍精油 업무부)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성장 및 무역신장의 정체지속에 따른 무역불균형, 산업구조조정 지연 및 저성장 고실업등으로 무역마찰과 보호주의성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美國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際石油情勢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尙存하는 가운데에서도 대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86년중 급락하였던 국제原油價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고정유가제 실시, 생산상한선 감축, 이란·이라크전쟁 격화 등에 따라 87년 상반기중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하락세로 反轉하여 17\$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과 흥분을 자아내게 했던 民主化의 熱氣와 대통령 直接選舉라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따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국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표출되어 不確實性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그동안의 균형감각 상실에서 오는 衡平의 욕구와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 등에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욕구의 과잉표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림픽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어 국제화의 분위기가 고조,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의 각종 정책방향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정유산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轉換期의 石油政策方向에 대하여 나름대로 短見을 피력하고자 한다.

2. 國內石油政策의 현황

(1) 石油政策의 목표

국내 석유정책의 흐름은 국가 경제발전 과정 즉 산업화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경제발전 초창기인 66년까지 국내 에너지정책은 石炭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소위 67년의 무연탄과동 이후 에너지정책이 主油從炭으로 전환됨으로써 석유정책이 경제정책상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정유공장의 新·增設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정유산업의 장치산업적 특성으로 外國資本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정유공장의 新·증설과 石油공급확대정책, 산업연료의 현대화계획 등에 따라 석유수요가 급증하므로써 石油수급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 정부는 70년 1월 1일 石油事業法을 제정·시행하였다.

同法은 그 目的을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石油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에 두고 있다. 즉, 국내 석유정책의 목표는 「需給安定과 價格安定」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이 두가지 목표가 相互二律背反的關係에 있음은 에너지자원 빈국으로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동안의 석유정책은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이라는 양대목표의 합리적 調和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왔다.

(2) 石油政策의 基本課題

가. 石油需給의 安定確保

87년의 국내에너지원별 소비비율을 보면, 石油 44.3%, 무연탄 18.4%, 유연탄 15.8%, 원자력 14.4%, LNG 3.1%, 수력 2.0%, 신탄 2.0%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너지 소비에서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석유위기 이후 지속적인 石油依存度 減縮政策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적어도 2000년대초까지는 主宗에너지源으로서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主宗에너지가 해외수입에 의존하여 공급되고 있다는데 石油정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석유정책의 일차적 과제를 石油수급의 안정확보에 두고 세부과제로 原油도입의 안정성제고, 비상시 대처능력제고를 위한 비축제도운용, 국내외 수급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제시설의 유연성확보

및 原油의 자주공급능력확대를 위한 국내의 油田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石油供給의 經濟性確保

앞에서 지적했듯이, 石油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은 상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바, 안정성과 경제성이 상충될 경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현실로서는 경제성은 2차적으로 둘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2차석유위기 이후 原油도입시 Surcharge지불 등이 잘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石油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경우 공급의 안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石油공급의 경제성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황에 따라 原油도입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지속적인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국제석유시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능의 강화와 전문가의 양성이 정부 및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 精油産業의 健全發展誘導

국내정유산업은 70년대 고도경제성장의 원동력인 主宗에너지의 수급을 담당해오면서도 2차 석유위기 이후 지속적인 脫石油政策推進 및 이에 따른 가동을 저하, 수요구조의 輕質化에 따른 시설고도화문제 脫石油 電源개발 및 이에 따른 잉여 B-C油의 처분문제 등 내부문제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石油가 2000년대 초기까지는 계속 主宗에너지로서의 위치를 지킬 전망임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정유산업의 구조적 체질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석유정책의 또하나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유연성 확보, 상하류부문의 수직적 통합 및 사업다각화 유도, 최신 경영기법 및 기술개발촉진, 이를 위한 금융세계상의 인센티브도입 등을 세부과제로 검토하고있다.

(3) 主要 石油政策의 推進內譯

가. 所要原油의 低價·安定供給

정부는 국내소요原油의 低價·안정공급을 위하여 모든 原油購入契約에 대한 承認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장기계약을 위주로 하되

경제성의 보안을 위하여 현물원유도입 허용범위를 10-40% 수준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왔으며, 86년부터 국제석유시황이 공급광잉으로 전환됨에 따라 現物原油도입범위를 사실상 해제한 상태다.

또한 原油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原油도입선다변화시책을 통한 중동의존도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原油부존지역의 편제와 산유국의 수출여력을 감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原油도입선다변화 추진책으로 원거리수송에 따른 추가운송비와 금융비의 정책보전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87년 5월 추가운송비의 산유국별 차등지원과 금융비지원폐지로 축소·변경한 바 있다.

이울러 국제석유시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石油情報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문가양성 및 해외정보망의 확충 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나. 脫石油政策의 持續的 추진

정부는 2차 석유위기 이후 국내에너지정책의 기초를 石油依存度 減縮方向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脫石油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石油代替電源開發事業의 적극추진, LPG 및 LNG등 가스보급의 확대, 석유다소비업종의 有煙炭代替를 통한 消費節약화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확대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다. 石油備蓄의 추진

두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세계 石油소비국들은 石油비축을 확대함으로써 非常時에 대비한 危機管理能力를 배

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석유위기 이후 정부주도의 석유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석유비축사업이 원유의 안정도입과 함께 石油供給不安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政策課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축사업은 政府主導下에 민간과 정부가 2元的으로 原油비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제품비축은 수급구조의 변화, 제품간 대체성, 보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비축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간비축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수준까지 민간비축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國內油價管理의 徹底

석유가격도 여타의 제품과 같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형성·변동되는 것이 자유경제제도의 원칙이나, 國內油價관리제도는 정부가 流通段階別 最高販賣價格을 直接決定·告示하는 방식으로서 엄격하게 統制해 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석유류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국제石油시황의 불확실성, 국내석유수급구조상의 과점성, 시장기능에 따른 유가결정방식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부족 즉 石油價格의 上昇一方姓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油價運用基調를 산업성장지원, 물가안정, 국민생활안정 및 정유산업의 과다이윤규제에 두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 석유위기 이후 77년 하반기부터 석유사업 기금제도를 도입, 수입석유에 일정액의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여 油價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원유가격 격동시의 완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油價관리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을 완화하여 간접규제를 통한 자율화 범위 및 대상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環境保全을 위한 低硫黃油 및 가스보급확대

7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및 차량증가로 환경오염원이 증가하므로써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81년부터 연료유의 유향함량기준을 강화하여 저유황경유와 저유황B-C油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87년현재 전국 28개 시·군지역에 저유황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비율은 경유 78%, B-C油 60%에 달한다. 또

1 차에너지중 석유비중 변동추이

(단위: %)

1981	1983	1984	1985	1986	1987
58.4	56.2	52.3	49.1	48.3	44.3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단위: %)

	1981	1986	1991(계획)
원 자 력	6.1	38.6	53.8
석 탄	7.4	28.2	19.3
석 유	71.1	25.1	14.3

한 87년 7월부터 無鉛휘발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신규휘발유차량에 대해서는 無鉛휘발유를 사용토록 하므로써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편의성추구와 연료의 고급화추세에 맞춰 가스보급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LNG인수기지를 건설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LPG유통구조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가스는 편리한만큼 사고위험이 크므로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바. 精製施設의 高度化

국내 石油의 수급구조는 휘발유, 輕油 등 輕質油 수효는 계속증가하는데 반해 脫石油電源개발과 산업체의 유연탄대체에 따라 B-C油의 수요가 격감하므로써 輕重質油間 수급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저유황연료유의 소요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저유황原油의 도입한계와 제품시장의 제약으로 국내소요석유의 안정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인 바, 정부는 重質油分解 및 脫黃施設設置에 의한 정제시설의 유연성체제로 국내석유수요구조의 변화와 국제석유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極東石油에 34천B/D규모의 분해시설설치사업을 허가, 88년 10월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87년 3월 향후 重質油분해 및 脫黃시설설치방안을 마련하여 精油社別로 적정규모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한 바 있다.

精油社別 고도화시설 설치방안

(단위 : B/D)

	1989	1991년이후
油 公	분해30천 / 탈황30천	분해10천 / 탈황20천 분해30천 / 탈황30천
京 仁	분해10천 / 탈황20천	
雙 龍 湖 油		

사. 石油製品 流通機能의 合理化

국내석유제품의 유통은 대체로 精油社, 代理店, 注油所의 3단계로 되어 있다. 81년 3월 대리점·주유소의 定數

制廢止이후 업소수가 급증하여 石油유통시장의 판매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동년 4월 공정거래법에 의거 석유공급계약기간이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으로써 複數去來 등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이들의 상승작용에 의한 주유소의 판매경쟁가열로 부정유통유통, 주유소허가의 이권화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유소기능의 다각화와 허가기준의 강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부정유통유통 근절대책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오고있다. 아울러 주유소판매마진의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부유통시장에 대한 품질관리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유통기능에 대한 석유사업법상 보완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轉換期의 石油政策方向

(1) 政策轉換의 必要性

政策이란 目標達成을 위한 投入과 轉換 그리고 產出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각계각층의 의견과 입장이 투입이 돼서 정책형성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행동으로 表出되는 구체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70년대 성장전략시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책은 정부주도에 의해 다시말해 관료를 중심으로 한 소수엘리트집단에 의해 형성돼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사회가 처해있는 여건과 당면한 정책과제를 종합해 볼 때, 지난날의 정책결정방식과 운용패턴 등에 일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민주화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려는 반사적인 욕구 등이 표출되고 있어 각종 제도 와 법규 및 시책 등의 전반적인 수정과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결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최대한 공개되고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의 주도권 역할을 가급적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수용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 같다.

(2) 石油政策의 評價와 轉換期의 方向

가, 持續的인 石油依存度減縮政策의 재고

2차 석유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石油의존도 감축을 위한 脫石油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원자력, 유연탄, LNG등으로의 에너지源 다원화와 에너지소비절약시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석유가격의 上昇-一性만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에너지부문 전체의 경직화현상을 초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脫石油電源개발계획의 경우 원자력, LNG 및 유연탄으로의 대체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시설투자과 장기계약의 불가피성으로 구조적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85년말 이후 油價하락으로 경제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화같은 B-C油일변도의 脫石油정책은 石油의 연산품적 특성을 고려시 수요구조의 경질화를 가속시켜 자칫 파행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따른 직·간접비용의 증가와 에너지전체의 경제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00년대 초기까지 석유는 계속 主宗에너지로서의 위치를 지킬 것임을 감안할 경우,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石油부문의 역할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석유정책은 他에너지정책의 완충·보완역할에서 탈피하여 主宗에너지로서의 존립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은 재고되어야 하겠다.

나. 原油導入의 自律性提高

국내原油도입정책의 목표는 소요原油의 안정확보와 低價도입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안정공급이 확보될 수 있는 장기계약을 근간으로 하여 국제석유시황의 변화에 따라 현물시장을 적정수준까지 활용토록 하므로써 저가안정도입을 유도해 왔으며, 이란·이라크의 전쟁에 따른 정정불안과 돌발적인 공급핍박상황에 대비코자 中東의존도 감축을 위한 原油도입선 다변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국수 확대위주의 양적 변화만을 추구할 경우 정유사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여 低價도입을 위한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외교·경제분야의 대외협력관계를 이유로 정책원유와 건설대전원유를 장기간 도입·사용토록 하므로써 정유사의 原油도입의 자율성을 제약해 왔는 바, 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原油도입정책의 방향은 소요原油의 안정확보와 低價도입을 운용기조로 하되, 정부는 장기원유수급계획의 수립, 산유국과의 자원의교강화 및 석유정보체제보강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석유공급의 팽박시기를 제외하고는 정유사가 소요원유를 자체책임하에 확보토록 하므로써 原油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이는 각 정유사각 社別특성에 따라 시장구조에 상응하는 최적원유투입믹스에 맞춰 원유를 도입하므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油價管理制度의 段階的 改善

국내油價관리제도는 그 운용기조를 물가안정, 산업성장 지원, 국민생활안정 및 정유산업의 과다이윤규제 등에 둠으로써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경제정책의 운용기조가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자율기조도입의 당위성이 강조되면서 규제중심의 油價관리제도는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유사 손익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므로써 자율경영정책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油價조정요인 및 시기의 결정에 경제·사회정책적 요소가 크게 작용되는 등 가격조정의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최종소비자가격의 직접결정으로 유통과정에서의 경쟁효과가 소비자단계이전에서 단절되고 있으며, 과도한 정부부문 비용부담으로 국제가격보다 비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油價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 경쟁제한요인을 최소화하여 정유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방향 즉,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화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油價자율화는 수출입자율화를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는 바, 국내석유정책의 기초인 소비지정제주의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국내石油의 안정공급체제유지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油價관리제도의 개선은 정부의 직접통제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간접규제를 통한 업계 및 수요자의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다만, 국내정유산업이 안고있는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油價관리제도의 전환에는 상당한 완충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부와 정유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종별·유통단계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라. 精油産業의 均衡的 健全發展誘導 및 支援強化

국내정유산업은 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수요정체와 지속적인 脫石油정책의 추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 정부의 油價를 통한 손익통제 등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중질유간 수급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重質油분해 및 脫黃시설의 설치, 기존노후시설의 개제·보완 등 막대한 시설투자소요를 안고 있다. 또한 제반여건의 국제화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하류부문의 진출 및 綜合에너지 산업화, 경영기법의 합리적 개선 등이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석유정책은 정유산업의 균형적 건전발전을 유도함으로써 主宗에너지의 수급안정을 통해 전체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가) 精油産業의 유연성提高를 위한 施設高度化 및 社別 均衡維持

국내石油수급구조는 경질유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脫石油전원개발계획에 따른 B-C油수요의 격감으로 輕重質油間 수급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저유황연료유의 공급확대로 저유황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고자 정부는 87년 3월에 重質油분해 및 脫黃시설의 설치방침을 확정 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일부 정유사가 사업허가를 받아 동시설을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우선순위에 의한 허가조치는 국내수급계획상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향후 수급정책추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1차 추진회사의 가동시점을 기준으로 경질유 및 저유황유 공급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도화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정유사는 안정적인 가동유지가 곤란해 경쟁력상실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정유산업의 건전발전유도라는 석유정책과제와 상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순위조정에 의한 정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급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임가공방식의 고도화시설 공동활용방안 등이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하여 정유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 新規投資에 대한 金融·稅制支援 強化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내정유산업은 정부로부터 손익을 통제받는 등 경영외적 요인에 의한 경영기반의 취약으로 구조적 전환기에 대비한 채투자나 신규투자여력이 미흡한데 반해 투자소요는 엄청난 실정이다.

국내경제정책의 기조가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있고 기업의 금융조달방식도 직접조달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정유산업이 자력으로 막대한 투자소요를 조달하기에는 그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석유정책추진시 主宗에너지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의 지속 또는 강화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도화시설을 포함한 정제시설 등의 신·증설 또는 개조추진시 석유사업기금의 융자 확대, 투자비용에 대한 특별상각 인정,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석유수급안정을 통한 국내에너지 수급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國際化時代에 대비한 海外事業의 活性化

국내정유산업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통합이 미흡하여 외국의 경우에 비해 구조적으로 체질이 약할 뿐 아니라,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설고도화의 불가피성, 수요침체에 따른 가동률의 저하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국제석유시장여건은 산유국의 하류부문진출 등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바야흐로 외국의 석유정책과 해외석유시장의 여건변화가 국내석유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정유산업도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해외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국내정유업체는 임가공수출, 미군납, 국제병커링 등 해외부문에서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여유정제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석유시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여 왔다. 또한 해외油田 개발사업참여 등 상류부문의 진출과 함께 하류부문의 진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같이 최근 油公등 4개사가 공동참여한 北 예멘 마리브油田개발사업이 성공함으로써 해외사업추진이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유도정책이 주요하였던 바,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국내정유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5) 石油産業의 効率性提高를 위한 石油事業法の 再檢討

국내정유산업이 구조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설비고도화, 수직적 결합 및 수평적 사업다각화에 앞서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한 자율성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간의 창의와 업계의 자율을 통하여 정유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유산업은 70년 1월 석유사업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아 옴으로써 정상적인 성장궤도에서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자생력이 약화되어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위주의 정유산업에 대한 각종 법규와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을 이루는 석유사업법의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만, 석유사업법의 재검토에 있어서 석유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현행규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깊이있게 파악한 후 정부,

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衆智를 모아 중장기전 안목에서 개선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4. 맺는말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필자가 정유업계의 일원으로 종사하면서 석유정책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느낀 바를 토대로 전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 취지를 오도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나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빔나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향후 석유정책방향의 전개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과 다소 논리적 비약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제정치·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나름대로의 변화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므로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향후 석유정책방향 결정시 다소나마 참고가 되길 바란다.

□ 해외 석유정책 동향 □

日本, 石油稅 대폭 인상

日本通産省은 최근 몇년동안 油價 하락과 円화급등으로 초래된 石油稅收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石油稅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석유세 과세기준도 從價稅 방식에서 從量稅 방식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석유세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原油 및 석유제품의 경우, 87년 전기평균 811円/Kl에서 2,040円/Kl(약 2.60 \$ / B)로 152% 인상된다.

日本の 石油稅 收入은 정부의 전략석유비축, 油田 탐사지원, 대체에너지개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日本 通産省은 石油稅 인상을 계기로 전략석유 비축량을 현재 22.8백만Kl 수준에서 89년 30백

만Kl, 95년 50백만Kl 수준으로 대폭 증대시킬 계획이다.

日本の 석유세 개편내용

	개 편 전*	개 편 후	인상률(%)
과 세 기 준	從價稅	從量稅	
石油稅의 개정			
원유·제품	평균811円/Kl	2,040円/Kl	151.5
LPG	282円/톤	670円/톤	137.6
LNG	305円/톤	720円/톤	136.1

* 종래의 석유세는 CIF와 관세의 합계액에 一定稅率(原油 및 제품 4.7%, 기타 1.2%)을 곱하여 계산되었음.